

##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  
회도회장은 30일

오후 3시 원주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에서 열리는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한다.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도회(회장 오인철)는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제 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공동수급체 지분을 따라 공정위 과징금 달라진다

감경기준 재정보... '경영난' 건설사 감경폭은 줄어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길 때 공동수급체 지분율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게 된다.

▶ 관련기사 2면

또 과징금 산정의 첫 단계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최저 기준이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높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대한 최대 감경폭을 줄이고, 적용시절도 심의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줄였다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먼저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 가운데 건설업에 대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상' 등급은 2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중' 등급은 100억~2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 미만으로, '하' 등급은 100억원 미만에서 4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공동수급체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 시에는 지분율에

따라 △70% 이상은 10% 이내 △30~70% 미만은 10~30% △30% 미만이면 30~50%를 각각 감경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지분율을 감안하되, 금액규모에 일정 정도의 재량한계를 줬다.

공정위의 감경 재량은 더 줄어든다. 조사협력 때 최대 30%까지 감경했지만 이를 20%로 낮췄고, 자진시정도 50%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과징금 산정의 최종 단계인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현행 '50% 이내'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했다. 지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때만 50%를 초과해 감경받지만 앞으로는 부채·담기순이익 등의 요건을 갖춰도 50% 초과 감경이 가능해진다.

새 과징금 고시는 '심의일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못박았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초부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 중 현 기준으로는 50%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30% 이내 감경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소급적용 논란은 물론이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 得 위반 '중대성' 판단기준 개선 失 자진시정 등 감경률 낮아져

## 뉴스 돋보기

### 새 '과징금 고시' 업계 특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른바 내년 1월 초부터 심의 사건에 전면 적용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높이고 지분율에 따라 감경 폭을 조정할 것은 기업들의 과징금을 줄여주는 요소다.

반면 감경 요소를 대부분 없애고 그나마 남아 있는 조사협력, 자진시정 등에 대한 감경률을 낮춘 것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기준이 더 엄격해진 것도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크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각종 감경요인에 따른 1·2차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등 3 단계를 거친다.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상 등급)'로 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금액을 현행 최대 2000억원에서 100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현실성 있게 바꾼 것이다. 아울러 '경쟁제한성', '피해규모' 등 중대성을 판단

### 1면서 계속='실수요자' 마음 잡는 인테리어 바람

이들 단계에 적용된 실수요자형 인테리어 항목으로는 △실속형 주방·수납 △납성 소비자들을 위한 서제 △B2C 인테리어 인기 아이템 등이 꼽힌다.

입주 후 해당 아파트에서 살림을 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방과 엔트리에 효율적인 수납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는 고려요소 역시 상세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해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했다.

건설사업자들에게 대해 전체 계약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던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특히 대비 기본 산정금액이 지나치게 커져서 판례를 따를 경우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감경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지분율 따른 감경규모 3단계 나눠 실제지분율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

### 같은 행위라도 심의시점 따라 감경기준 달라져 논란 일듯

하지만 지분율에 따른 감경규모를 △70% 이상 △30~70% 미만 △30% 미만 등 3단계로 나누다 보니 실제 지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율 30%인 사업자와 69%인 사업자 간 감경폭의 차이가 적다는 것이다.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각종 감경 요소는 삭제된다.

'위반행위의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등 각종 항목과 '단순 과징', '상당한 주의의 기울인 경우' 등 감경 항목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 방위로 가장 폭을 대폭 늘렸던 '조사방

해' 항목도 이번이 가장 요소에서 빠졌었다. 이 경우 법률상 과태료·벌칙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반복법 위반' 관련 가장요소는 1·2차 조정단계에 모두 포함돼 있어 과징금 산정 구조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1차 조정단계로 모두 합치기로 했다.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20%로, 50%에서 3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감경요인을 자주 풀이면 공정위 조사나 자진시정의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줄여주는 제도는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재량한도도 줄어든다. 특히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고 명시한 부칙이 논란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같은 시점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심의 시점에 따라 감경폭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급적용 우려가 있지만 과징금 고시는 형법이 아니고 현실적 부담능력 기준은 행위 시가 아닌 심의 당시 기업의 경영상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량 한도를 축소하려는 고시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런 과징금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만들어도 일선에서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 감사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 건협 강원도회, 4차 운영위 개최... 오늘 국방시설본부 토론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29일 오전 도회 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운영위에서는 도내 건설수주 동향과 제도 개선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한편 오인철 도회 회장은 30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을 찾아 군 시설공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격조지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